

예 산 총 칙

2017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65,667,412	10,970,022
일반회계	326,589,513	9,797,685
특별회계	39,077,899	1,172,337
공기업특별회계	10,652,606	319,578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0,652,606	319,578
기타특별회계	28,425,293	852,759
수질개선 특별회계	18,769,291	563,079
주택사업 특별회계	2,803,450	84,104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949,009	28,470
자활기금 특별회계	1,766,953	53,009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2,787,955	83,639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770,537	23,116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423,788	12,714
기반시설 특별회계	32,078	962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122,232	3,667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983,862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700,000천으로 한다.

제 7 조 최종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국가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는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복구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